

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

[이흥희의원 대표발의]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5. 09. 09.(화)

발 의 자 : 이흥희, 김홍섭, 박수자, 최준규,
신미정

1. 수정이유

-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경제기업과 소관 2025년 소상공인의 날 행사 운영 10,000천원을 추가로 삭감하고 그 외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수정 요구합니다.

2. 수정내용

- 경제기업과 소관 2025년 소상공인의 날 행사 운영 10,000천원 삭감

3. 관계법령

- 「거창군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(수정동의)
- 「거창군의회 회의규칙」 제62조(예산안의 수정동의)

수정안 대비표

당초(위원회 수정안)			변경 수정안			비고
부서명	사업명	사업비 (백만원)	부서명	사업명	사업비 (백만원)	
계		△1,000			△1,010	
			경제 기업과	2025년 소상공인의 날 행사 운영	△10	
건설 교통과	공영주차장 조성	△1,000	건설 교통과	공영주차장조성	△1,000	

▶ 거창군의회 회의규칙

제22조(수정동의)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.

③ 위원회는 소관 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.

④ 의안에 대한 대안이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.

▶ 거창군의회 회의규칙

제62조(예산안의 수정동의)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.